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3조에 의거 4-H활동지원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4-H후원기금운영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일몰기간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 -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
- 후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회 심의 사항 규정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13조
-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현행 4H후원기금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4H활동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2조)
 -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
- 기금운용·관리 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(안 제5조, 안 제6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현행 4H후원기금 운용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
- 4H활동지원 기금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4H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